



LG 윤리규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

LG 윤리규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



C O N T E N T S

LG 경영현장	02
LG Way와 정도경영	03
LG 윤리규범	
전문	06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1
제2장 공정한 경쟁	19
제3장 공정한 거래	27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37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59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65
부칙	73
LG 제보시스템	79

경영현장

LG는 인간존중의 경영에 의해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LG는 합리적인 사업확대를 도모하고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고객에게 배우며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고객과 함께 발전한다.

또한,
인간이야말로 가치의 원천이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조직운영과
적극적인 인재육성을 도모한다.

개인은 능력계발과 기술연마에 힘써
각자의 사명을 달성한다.

이러한 노력을 쌓아
LG는 세계의 일류 기업집단으로서
영속적으로 발전한다.

LG Way란?

LG Way란 우리가 추구하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LG의 행동방식인 '정도경영'으로 실천해 궁극적 지향점인 '일등 LG'를 달성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도경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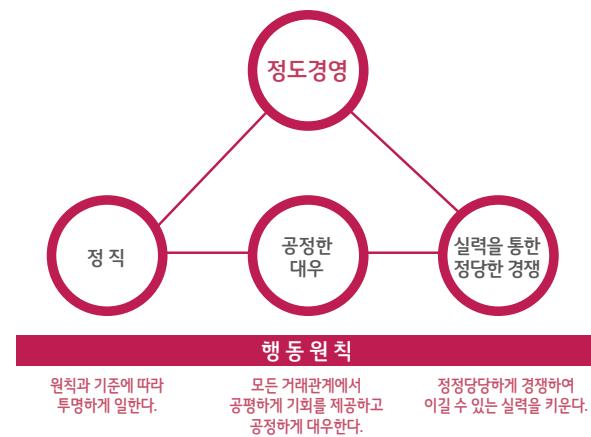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실력을 배양해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는 LG만의 행동방식을 의미합니다. 정도경영이란 단순히 윤리경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윤리경영에서 나아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G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키면서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진력하는 것이 진정한 '정도경영'의 정신입니다.

'정도경영'이 명실상부하게 LG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을 때, LG는 고객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도경영의 구성요소는?

정도경영은 정직, 공정한 대우, 실력을 통한 정당한 경쟁 등 3개 요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등 LG를 향한 모든 노력은 정도경영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단기적 성과가 아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는 일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위용을 자랑하던 거대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여 몰락의 길을 걷고 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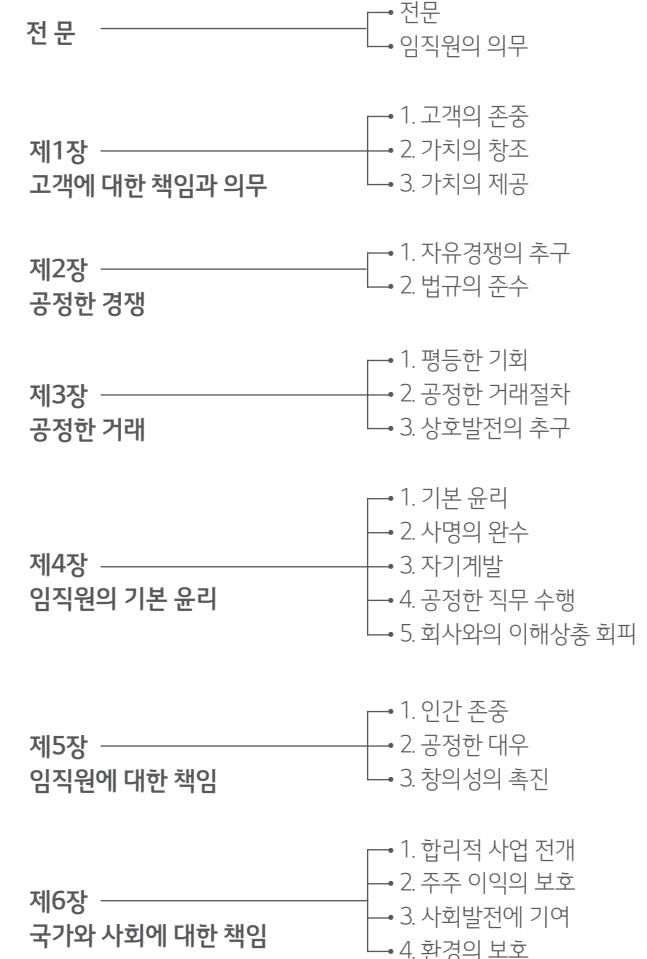
깨끗하고 건전한 기업만이 오래도록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지금까지 견지해 온 정도경영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갑시다.

세상이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 온 정도경영과도 일맥 상통할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주저 없이 버리고, 기본과 원칙에 더욱 충실한 경영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본무 회장(1945~2018)



LG 윤리규범의 구성



전문

LG 윤리규범

LG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경영현장의 정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경영을 도모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 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임직원의 의무

윤리규범 실천지침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LG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언제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2) 임직원은 자신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윤리규범 위반 행동을 목격한 경우, 또는 위반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사무국¹⁾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① 단, 윤리사무국 신고 이전에 조직 책임자에게 우선 서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조직 책임자는 반드시 소속 임원에게 보고한 후, 신고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윤리사무국에 통보합니다.

② 임직원은 LG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정도경영 관련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조직책임자 또는 윤리사무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 (임직원)]

- ① 입사, 진급 그리고 직책보임 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제출 합니다.
- ②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에 대한 관리 부서 및 방법 (온라인·오프라인)은 각 사가 결정합니다.
- ③ 표준 양식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	
<p>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1. 구성원을 존중하고, 공정거래를 통해 협력업체와 상호 발전하며, 경쟁사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정직하게 제공하고, 주주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p>	
<p>2. LG의 임직원으로서 조직 내 정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p>	
<p>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LG윤리규범을 포함한 사내 규정을 숙지하고 공정거래법 등 Compliance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p>	
<p>4.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거래처로부터 부정·비리 행위를 제안받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겠습니다.</p>	
<p>5. LG 윤리규범 위반 행위 또는 Compliance 위반 행위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 진행 시, 회사가 요청하는 관련자료(서류 및 E-Mail, 회사PC와 VDI에 저장된 파일 등 전자기록 포함)를 제출하고, 동 자료를 회사가 검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협조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p>	
<p>6. 만약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p>	
년 월 일	
소속 :	
사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LG는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하에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무조건의 신뢰를 받는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의 존중

LG 윤리규범

-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경영의 출발이 되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항상 최종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 (2) 법규를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3)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2. 가치의 창조

LG 윤리규범

-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 2)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기존의 틀을 깨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 (2) 고객의 잠재된 요구까지도 한발 앞서 찾으려 노력합니다.
- (3) 끊임없이 더 나은 방식을 찾아 실행합니다.

3. 가치의 제공

LG 윤리규범

- 1)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2)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정확하게 응답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고객이 최고의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립니다.
- (4) 불량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Q&A



고객사에 신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인증까지 받은 부품이 추운 날씨에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객사의 담당자는 고객사가 요구한 Test 항목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기가 늦어지면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으니 그냥 납품을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품질문제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품질이슈를 납기와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정정당당하게 승부한다! LG 트윈워시

LG 전자는 세탁기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 트윈워시는 세계 최초로 두 대의 세탁기를 상/하단에 배치, 하나의 세탁기로 결합하여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분리/동시 세탁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LG 전자는 '분리' 세탁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황당할 수도 있는 '서랍장에 세탁기를 넣자'는 아이디어를 실현시켰다. 물론, 크기를 40% 줄인 슬림 모터개발, 두 개의 모터가 돌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공진(진동의 증폭현상)의 제어, 급/배수 시스템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무척 높았다.

트윈워시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기간만 8년, 150명의 개발인원 투입, 일반제품 개발비의 5배인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투자되었다.



개발한지 6년이 지났을 무렵 연구진에서는 이제 트윈워시를 출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각 나라마다 사용 환경이 달라 철저한 테스트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년여의 추가 개발 과정이 더해졌다. 이때 집중한 것은 미국의 사용 환경에서 나타난 '잔류수 역류 현상' 억제. 미국에서는 역류한 물이 수도꼭지에 4cm 이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고, 추가 개발 기간에 연구팀은 이 문제도 결국 해결했다.

이렇게 출시된 트윈워시는 세계 어디서나 완벽한 성능을 선보이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작은 부분이라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철저히 연구하고, 고객의 숨은 욕구를 알아내어, 고객 가치를 총족시키려는 우리 LG 인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대 이상의 놀라운 제품, 서비스,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LG! 우리의 활동 하나하나가 더 나은 고객의 삶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잊지 말자!

창립 70주년 기념 70가지 이야기
'세계가 놀란 LG 세탁기의 혁신' 중에서



Hong Kong

제2장 공정한 경쟁

LG는 전 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 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자유경쟁의 추구

LG 윤리규범

-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2)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고, 정당하게 활용합니다.
- (2)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정당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실행합니다.
 - ①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습니다.
 - ②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 (3) 부당한 담합행위로 타 사업자 및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4)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알립니다.



정보의 입수·활용 관련 주의사항

- 고객이나 협력업체를 통한 경쟁사의 기밀정보 수집 행위 금지
- 경쟁사 출신 인원 채용시, 경쟁사의 기밀정보나 자문 요구 행위 금지
- 경쟁사 관련 정보를 경쟁사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행위 금지
 - 경쟁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며, 경쟁사와의 담합으로 오인될 수 있음

조사기관, 컨설팅사, 기타 전문가를 통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금지



부당한 담합 금지 관련 주의사항

- 경쟁사와 가격·입찰 담합 행위 금지
 - 가격산정 방식이나 확정 가격, 마진율 등에 대한 합의
 - 입찰 시 낙찰자, 낙찰 가격 등에 대한 합의

상품의 종류, 거래량 및 생산 설비 등을 제한하는 협정 금지

- 상품 / 서비스의 종류, 수량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한 생산설비 확충 제한 등

경쟁사와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협정 금지

- 판매지역 할당, 거래처의 고정·할당 등

법무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 없이 경쟁사와 사업 정보 교환 행위 금지

경쟁사와의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 참석 금지

- 경쟁사 임직원과의 협의나 정보교환 등은 될 수 있는 한 회피

2. 법규의 준수

LG 윤리규범

- 1)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합니다.
- (2) 특히 국내외의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 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편의나 특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제공 또는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 ②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해외 뇌물거래 방지법)
 -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
 - ③ 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행위 등은 예외로 합니다.
- (3)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

- ① 입사, 진급 그리고 직책보임 시 부패방지 법규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②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에 대한 관리 부서 및 방법(온라인·오프라인)은 각 사가 결정해서 시행합니다.
- ③ 표준양식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등한 참여 기회 속에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념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원칙을 추구하고 국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의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및 영국의 'Bribery Act' 등을 비롯한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하 「부패방지법규」)을 준수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국내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따르겠습니다.
2. 국내외 부패방지법규 및 회사의 (기부규정 등 관련 사규 기재), 준법지침서 등 관련 내부 규정·지침을 숙지하며, 이에 따라 국내외 공무원, 언론인 등 부패방지법규의 적용대상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 또는 기타 수수금지 금품 등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부패방지법규, 규정·지침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3자로부터 부패방지법규, 규정·지침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제안받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 내 상급자, 윤리사무국 또는 준법지원 담당 조직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3. 협력사, 컨설팅사, Agent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에 의한 부패방지법규 위반 행위, LG(계열사) 협력사 행동규범 위반 행위, 부패방지 관련 계약상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선량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4. 부패방지법규 및 회사의 관련 내부 규정·지침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본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사번 :

성명 :

Q&A



사업관련 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에서도 참석하기 때문에 경쟁사 직원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나 이슈 논의 시 가격이나 판매 조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담합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나요?



A 경쟁사와의 회의 도중 가격이나 생산량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것임을 밝히고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 거부와 즉시 자리를 피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Compliance 담당 부서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규 협력업체 중 한 곳이 예전에 경쟁사와 거래를 하던 곳인데, 신규 부품을 제안받으면서 경쟁사 기술을 일부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기술을 사용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경우도 윤리규범 위반이 되나요?



A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단 사용은 협력업체를 통한 것이라고 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이라도 제 3자의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유의해야 합니다.

Q&A



해외에 물품 수출시 통관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매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지 에이전트 중 한 업체가 여기는 세관 담당자에게 별도의 급행료를 주는 것이 관행이니 자신을 대행사로 선정하면 그것까지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대행사에 일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A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뇌물 제공은 직·간접 여부와 무관하게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계약 시에도 우리 사업과 관련한 뇌물 제공이나 청탁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리고 계약서나 별도 서약서를 통해 동참하도록 해야합니다.



제3장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평등한 기회

LG 윤리규범

- 1) LG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 2)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모든 거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원칙과 제반 규정을 정립하고 실행합니다.
- (2)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 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포함하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설정합니다.
- (3) 회사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관련 주의사항



참여 제한 금지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기피(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한정하는 행위



일방적인 거래 거절 금지

회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나 법적인 이슈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차별 금지

특정 업체에 특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유 없이 납품 가격 · 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또는 물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거래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행위



청탁 금지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업무 담당자 또는 제 3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
※ 내부 또는 외부 인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는 경우 즉시 윤리사무국 신고

2. 공정한 거래절차

LG 윤리규범

-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거래 중인 협력업체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공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을 준수하고,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합니다.
- (2) 협력업체와 거래 시에는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평등, 부당 대우 등의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3) 거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회사의 잘못으로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배상합니다.
- (5) 협력업체와의 거래 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 및 조직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관련 협력업체와 협의합니다.
- (6)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승인을 얻고, 모든 정보는 문서에 의한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협력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정보가 제공되어 영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인력 유출 등의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 공정한 거래절차 관련 주의사항

부당한
거래거절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거래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
금지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가격, 거래 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거래 강제
금지

끼워팔기 등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 금지

-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거래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또는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 처분
- 기타 상대방의 인사, 투자 등 경영상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구속 조건부
거래 금지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 등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활동
방해 금지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 부당하게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금지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 지원이나 거래 단계 추가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과다하게 지원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상호발전의 추구

LG 윤리규범

- 기술 지원 및 경영 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깨끗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상호 노력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협력업체 육성 기준에는 지원대상 협력업체의 자격을 명시하고, 기술 지원이나 경영 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합니다.
- 기술 지원이나 경영 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합니다.
- 정도경영에 대한 합의로서, 협력업체로부터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아 관리합니다.

정도경영 실천서약서 (협력업체용)

- 협력업체 정도경영 실천서약서 수취 및 관리는 계약 관련 부서가 담당하며, 수취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은 각사가 결정합니다.
- 윤리사무국은 협력업체 정도경영 실천서약서의 수취 여부 및 관리 수준에 대해 감독합니다.
- 표준 양식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

당사는 귀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정직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귀사의 정도경영의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써 상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사와의 거래에서 금품향응 제공, 부정청탁, 문서계수 조작 등 귀사의 정도경영 기준에 위배되는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귀사와의 거래에서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제의받거나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정도경영 위반 행위 신고센터(LG 계열사명 윤리사무국 Tel,FAX, http://)로 알리겠습니다.
-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하는 관련자료(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서류, 금융자료 포함)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 당사는 귀사가 정도경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귀사와의 거래에 있어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의 근절이 귀사와 협력적인 조건으로 협력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전제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 서약서의 준수가 당사와 귀사 사이의 계약 및 협력관계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위반 시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당사가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귀사와의 계약해지, LG 그룹과의 거래제한조치, 정도경영 위반 협력회사 등재제거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사업자 등록번호:

LG () 귀종

대표 이 사:

(서명 또는 인)

Q&A



친하게 지내다가 회사를 퇴직한 선배가 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번 입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전에 정한 입찰 기준에 보면 선배가 설립한 업체는 규모나 경력 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력업체 선정은 사전에 정한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견적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업체가 아직 견적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던 옆부서 선배가 와서 현재 업체들이 얼마에 써 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팀 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알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입찰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는 업무 담당자에 한해서만 열람하도록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업체 선정과 관련된 정보 (견적 단가, 순위 정보, 회사명 등)를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Q&A



기존 거래하던 협력업체 중에 A업체가 기술력, 가격 경쟁력, 업무대응 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가 입찰을 하고 보니 B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B업체는 과거에 품질 문제도 일으켰던 업체인데 기준을 변경하여 재입찰을 진행해도 될까요?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선정된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번복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B업체의 품질 문제 재발이 의심된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입찰 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재입찰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해당 협력업체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협력업체의 단가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현재 원자재 값이 내려갔으므로 그렇게 해도 협력업체에는 큰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협력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확보되더라도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행위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수 있으니, 협력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G Twin Towers, Korea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LG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LG 윤리규범

- 1) 임직원은 LG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LG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LG인의 명예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 (2) 임직원은 법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불공정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 (3) LG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언행이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①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괴롭힘이나 반사회적 언행, 따돌림 등
 - ② 회사 내 임직원간에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금전 대차
 - ③ 문란한 사생활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 실추
- (4) 회사 내 임직원 간의 허례허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① 승진 및 이동에 따른 화환·선물 주고받기, 과도한 내부 의전 등

2. 사명의 완수

LG 윤리규범

- 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 4) 동료 및 관계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 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충실히 준수합니다.
-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 (3)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4)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고 회사정보의 대외 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으며 승인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합니다.

3. 자기계발

LG 윤리규범

- 1)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역량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 (2)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교육목표에 부응합니다.

4. 공정한 직무 수행

LG 윤리규범

-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적기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① 문서·계수의 조작이나 허위 보고 등은 조직 책임자나 관련 부서의 올바른 의사결정 및 판단을 저해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 ②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시지하거나,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그대로 따르는 일 또한 동일한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 ③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세법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2)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¹⁾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① 이해관계자와의 개인적인 거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윤리규범 실천지침

(3) LG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¹⁾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이나 공동투자, 공동 재산 획득 등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 ① 이해관계자 주식보유나 공동 투자, 공동 재산 획득 등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실질 소유관계에 근거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③ 미 신고분이 인지될 경우 임직원 본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귀속되며, 해당 협력업체도 관련성을 판단하여 거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4) 임직원들은 직위·직책 상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①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이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부하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② 임직원의 불공정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거나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조직 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즉시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③ 지위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④ 자신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부정직 보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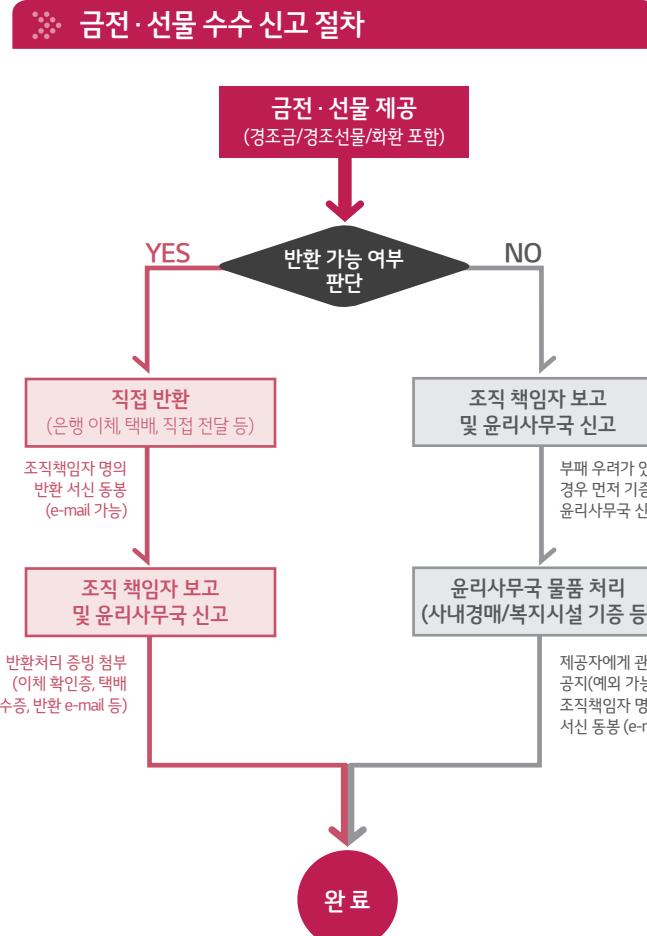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문서·계수의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수치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매출 등 회사 실적이나 입찰 관련 자료, 외부 시장 관련 자료 등
 문서의 임의 삭제·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문서 관리 기준 및 법규에 의한 보존 연한 경과 이전에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폐기하는 행위 ■ 입찰 서류, 품의서 등 관련 증빙 자료의 은폐, 삭제 또는 폐기하는 행위 등
 부정직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경영진이나 상급자에게 부정직한 내용을 보고 ■ 정도경영 조직 등 사내 감사 부서의 요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제출 ■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 전달 ■ 직접적 허위 보고 외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유도할 목적인 정보 조작 행위 등 ■ 보고를 누락·지연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¹⁾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 및 협력업체로 직접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회사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금전·선물 수수 금지 유형		
구 분	내 용	비 고
금전	■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 증권	
강사료	■ 이해관계자 주관 행사에서 강의하고 강사료 수취	
선물	■ 물품, 시설·서비스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특정인에게 한정된 판촉이나 할인혜택 등	
경조금 경조선물	■ 경조금, 경조 물품(화환, 돌반지 등) 수취 이해관계자에게 공지 금지	
차용 / 매입 / 매도	■ 동산/부동산 등 이해 관계자의 자산을 임차, 담보 설정, 무상 수수, 매입 등 ■ 임직원 개인 소유 자산을 이해 관계자에게 매도 개인 편의 및 영리 목적의 개인적 거래 금지	
부채 상환	■ 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보증	■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제의 금융기관이나 대출의 형태 불문	
금전대차	■ 이해관계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수취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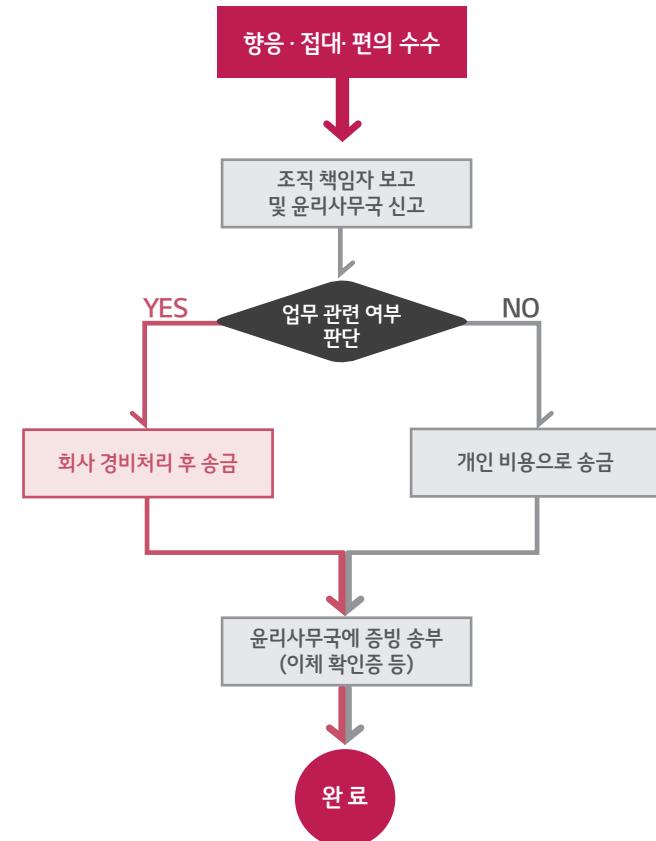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향응·접대·편의 수수 금지 유형

구 분	내 용	비 고
 비용 부담	■ 접대비, 회식 경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를 이해관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비용 환불
 식사	■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 허용금액 한도 (인당 5만원, 회당 30만원)를 벗어난 향응 수수	한도 내에도 조직 책임자 승인 필요
 불건전 업소	■ 불건전업소 및 사행 업소(카지노 등) 출입	이해관계자와 동반출입 금지
 스포츠 /여행	■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 행사 외 이해관계자 와의 접대성 모임 - 골프, 스키, 낚시, 여행 등 ■ 업무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 - 국내외 관광 목적의 연수/세미나 등	
 편의 수수	■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를 수수하거나, 먼저 이해관계자에게 편의 제공 요구 - 출장 교통 편의나 숙식 편의 등	업무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상급 임원 승인 및 정당한 대가 지불
 협찬/찬조	■ 회사 또는 부서 행사 협찬 요청 또는 수수 - 금전, 물품 등	
 미래 보장	■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 보장이나, 취업 알선 약속 ■ 이해관계자와 퇴직후의 거래 약속	

▣ 향응·접대·편의 수수 신고 절차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협력회사 부당 지분 참여 유형

구 분	내 용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업체의 주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 계열사, KOSPI 200지수에 포함된 회사는 제외 ■ 협력회사로 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를 고려할 때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포함
공동 투자/ 공동 재산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와 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동산/부동산을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도·골프·헬스 클럽 등의 회원권, 부동산 투자 등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명의로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음으로써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협력업체 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 겸직 행위 및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협력업체 지분 참여 신고절차



5.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LG 윤리규범

1)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습니다.
- (2) 타회사에 고용되거나, 타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정상업무 수행이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 (3) 임직원의 친인척이 회사의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 조직 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직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이해관계 상충을 피해야 합니다.
- (4)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과 비용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①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직 책임자 및 상급 임원에게 보고하고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 (5)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내·외의 모든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① 회사의 기밀 및 정보자산을 무단 공개와 유출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타인과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적법한 승인 절차와 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③ 정보보호의 대상은 회사의 지적 재산 외 개인 정보 및 제3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 (6) 회사와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해 상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조직 책임자 및 윤리사무국에 그 사실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사용 유형

구 분	내 용
유형 자산 횡령 및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토지, 건물, 설비 기기 등 유형 자산을 사업목적 외 전용, 무단 사용,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 ■ 업무용 자산: 차량, PC, 고가의 소모품, 사무용품 등 업무용 자산을 무단 반출, 무단 사용, 가족/친지 제공, 유지비 전가 등 ■ 법인카드: 비용 계정의 전용, 사적 사용 등
무형 자산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설계도의 유출, 영업기밀/사업 정보의 유출, 정보시스템의 유출 등을 통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 ■ 직위·직무를 이용해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한 개인의 영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외부 강연, 사업 컨설팅 등 • 업무상 필요시 상급 임원 승인
공금 횡령 및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증여 ■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 (카드 깡 등) ■ 혀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처리 ■ 무증빙 비용처리 제도의 악용 (사적 비용 처리) ■ 회사 법인 카드를 가족/친지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
정보보안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정보 공유시 승인 절차 및 보안지침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정보 및 제3자 정보 포함

Q&A



외부 식당에서 팀 회식을 하는데 분위기가 과열되어 큰소리도 나고 술이 취해서 팀원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 방에 있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냐? LG 직원들은 공중도덕도 모르나'며 시비를 걸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사람들이 사이버신문고를 통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윤리규범 위반인가요?



LG 임직원은 사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외에서도 LG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일과 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이는 윤리규범 위반에 해당됩니다. LG인으로서 사건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회식자리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욕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 등으로 LG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입사 동기들끼리 단체로 SNS 대화방을 만들어 업무 이야기도 하고, 회사사람들 이야기도 하던 중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은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이나 외모, 옷차림부터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성희롱성 발언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담이라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문제제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대화방 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것은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고 개인 인격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Q&A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전 팀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요즘 에이전트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렵다면서, 제안서 쓰는데 양식만 참고하도록 최근 영업전략 보고서와 가격 정책 등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파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만 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요?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외부 인원에게 회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업무 필요에 의해 공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전략이나 가격 정책 등의 비밀 문서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월말에 할당 실적 때문에 고민하다가 친한 대리점에 추가 매입을 부탁하고 나중에 물품 할인을 해 주거나 비용 지원을 해 주면 실적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량 떠넘기기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하게 거래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공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처의 불편/부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Q&A



최근 원가절감 활동을 하면서 주요 수입 원자재 중 하나를 국산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양산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원가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품질 기준을 상회하지만, 고객사로부터 부품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올해 실적에는 반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품질 부서와 협의해서 고객 승인이전에라도 부품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고객사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자재나 작업방법의 변경(4M 변경¹⁾ 등)은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고객 승인 없이 부품 변경을 한다면 향후 고객사의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객회사의 임원께서 최근에 잘 마무리된 납품 건에 대해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부서 회식에 사용하라고 와인 두 병을 보내주셨습니다. 돌려주는 것이 무례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선물은 금액과 무관하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됩니다.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즈니스 관계상 돌려주기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사무국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A



회식을 하러 간 자리에서 우연히 협력업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계산을 하려고 하니 그쪽에서 저희 몇까지 계산을 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원은 4명이고 인당 3만원씩 12만원이 나왔습니다. 식사 혼용 한도(인당 5만원, 회당 30만원 이하)를 넘지 않는데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이 경우는 업무 협의차원의 식사가 아니라 '비용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받아서는 안됩니다. 조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품의서를 통해 경비 처리한 후 해당 협력업체에 돌려주고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협력업체로 등록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윤리규범을 찾아보니 협력업체 주식은 보유금지가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매입시보다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바로 팔면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력업체 주식보유는 LG 계열사 및 KOSPI 200 지수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협력업체임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윤리사무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큰 경우 윤리사무국과 상의하실 수 있으나, 본인의 업무가 해당 회사와의 거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매각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주식보유 신고 제도는 본의 아니게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임직원이 법규 위반이나 불공정한 직무수행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제도 이므로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¹⁾ 4M (Man, Method, Machine, Material) 변경 : 이미 양산하고 있는 제품의 공정에서 작업자, 제조설비, 작업방법, 원자재 등 제품의 성능/기능/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히 B2B 회사의 경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부 품질부서 및 고객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사에 알리지 않은 변경사항으로 인해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클레임의 대상이 됨

Q&A



윤리규범 위반행위를 목격해서 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윤리사무국에는 신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보를 하고 싶지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몇 안되어 제가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제보자 보호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리규범 위반 행위를 조직 책임자에게 알리는 것은 고의가 아닌 단순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책임자 보고 후에도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윤리사무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이나 기타 정보는 제보자 보호 규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사의 시기나 방법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도경영 실천사례

A 상무는 부친상을 치르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지만, 소식을 알음알음 알게 된 협력업체에서 부의금과 조화를 보내왔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A 상무는 접수된 부의금 일체를 협력업체에 반환했고, 조화에 해당하는 금액(약 100만원)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

LG는 2013년도에 임직원들이 협력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그동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5만원 이내 수준의 경조금도 일절 받지 않도록 윤리규범을 강화했다.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하였다.

또한 전무급 이상 고위경영진부터 솔선해 호화로운 장소를 피하고 하객 규모와 예물도 최소화해 겸소하게 치르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대상으로 '사내 시설 결혼식장 대여' '쌀화환 신청 및 기부' 등 회사 차원의 '작은 결혼식' 지원 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대기업은 많은 협력업체와 관계가 있다. 만약 대기업 임직원들의 경조사가 있게 되면 협력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을 갖는다. 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는 혀례허식을 없애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LG의 솔선수범 사례로 볼 수 있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LG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인간 존중

LG 윤리규범

- 1) LG는 사람에 대한 상호 대등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합니다.
- (2)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3)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해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 (4)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합니다.

2. 공정한 대우

LG 윤리규범

-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 이동, 진급, 보직 결정 등)를 연령, 성별, 학벌, 출신 지역, 국적 등에 관계없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합니다.
- (2)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계발 의욕을 북돋우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창의성의 촉진

LG 윤리규범

-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2)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① 사내에서 부적절한 차별, 괴롭힘, 성희롱, 신체·정신적 강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 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 조치를 합니다.
- (3)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합니다.
- (4)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정치적 의사를 존중합니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LG는 합리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 전개

LG 윤리규범

- 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2)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 (2) 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정치 보조금이나 뇌물 제공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주주 이익의 보호

LG 윤리규범

- 1)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히 공시합니다.
- (2)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 (3) 임직원은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주식 거래 차익을 얻거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사회발전에 기여

LG 윤리규범

-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학벌, 성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합니다.
-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3)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합니다.

4. 환경의 보호

LG 윤리규범

- 1)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1) 환경 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지구온난화 방지, 에너지 절감, 수자원 보호 등 환경 보호에 부합되는 사업활동을 추구합니다.
- (2)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 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합니다.
- (3) 지역 사회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Q&A



업무 수행 중 한 외국기업이 우리 계열사에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G의 계열사인데다가 KOSPI200지수에도 포함된 회사라서 협력업체 지분 참여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위 사례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 및 차익을 얻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LG의 계열사 및 KOSPI 200 지수 주식 보유 허용은 이와는 별도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내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작업할 때 가끔 밸브를 잠그지 않는다는거나 안전규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아니고 저희가 그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안전관리를 할 수도 없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LG는 환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 수칙 미준수를 발견하는 즉시 협력업체 및 사내 안전환경 부서에 알려서 안전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업체 인원들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 규정 미 준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및 환경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업체와의 계약 및 관련 법규를 통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응급처치를 하다 목숨을 잃은 육군 상사,’ ‘서해대교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 공무원,’ ‘지하철 역사 내 위급한 생명을 살린 해군 중위,’ ‘화재현장에서 아이들을 구한 굴착기 기사’…

LG는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의로운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LG의인상을 제정하여 의로운 행동으로 근로능력을 잃었거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이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저신장증 아이들을 위한 유트로핀(성장호르몬) 지원사업’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창립 70주년 기념 70가지 이야기
'사회정의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고 배려한다',
'스스로 일어서는 삶을 함께 만드는 LG의 나눔활동' 중에서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라 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에 보탬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업을 일으킴과 동시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런 기업만이 영속적으로 대성할 수 있다.”

〈구인회 창업회장〉

적용 대상

1. (주)LG를 포함한 LG 계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와 그 자회사의 임직원 및 해외법인 임직원은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이하, 이를 합해 '윤리규범'이라고 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LG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 법인의 경우, 현지 법규나 관습 등을 감안해, 일부를 변경 사용할 수 있으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주)LG 윤리사무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3. LG는 LG와 거래하는 독립된 제 3자¹⁾가 윤리규범의 내용과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이해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거래 계약서상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운영 조직

1. 정도경영 실천과 윤리규범 준수에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사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그 구성은 대표이사(CEO)를 위원장으로, 재무, 인사, 법무 및 정도경영 조직의 최고 책임자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체에서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도경영 정책 수립과 체계 정립 등 정도경영 실천과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제반 실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윤리사무국'을 설치합니다. 단, 정도경영 조직 산하에 동일한 기능을 둘 수 있습니다.
 - 1) 윤리사무국의 장(이하 '윤리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윤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표이사가 임명합니다. (단, 정도경영 조직 산하 기능의 경우, 그 장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 2) 본사 지원 부문 및 각 사업본부와 주재임원이 있는 지역 등(이하 '해당 부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정도경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윤리사무국 산하에 '부문 윤리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3. 윤리사무국의 권한과 의무
 - 1) 윤리사무국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열람,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2) 윤리사무국은 정도경영 활동 결과의 보고 및 정도경영 활동의 지원 요청 등을 위해 필요시 '해당 부문의 장'과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조직

- 3) 윤리사무국은 정도경영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자체 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도경영 조직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 및 '해당 부문의 장'에게 보고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윤리사무국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그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5) 윤리사무국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경영 위반 사항의 처리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도경영 위반 사례를 취합해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4. 역할

- 1) 정도경영 전략 및 정책 수립·변경, 주요 의사 결정 사항의 윤리위원회 상정 등 전사 정도경영 운영 방향 수립
- 2) 제보 접수 및 제보자 보호, 부정비리 신고 포상, 각종 신고 등 정도경영 관련 제도 운영
- 3) 교육체계 수립 개선 및 홍보, 윤리규범 관련 자문 등 정도경영 문화 정착 활동
- 4) 기타 정도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

윤리규범 개정**1. 윤리규범 개정****1) 개정 요건**

- ① 윤리규범: 'LG의 정도경영'정책과 체계 관련한 중대한 변화로 인해 윤리규범의 수정, 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윤리규범 실천지침: 원활한 정도경영 활동 및 실천을 위해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절차

- ① 윤리규범: (주)LG 정도경영TFT의 제안으로 (주)LG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최종 의사 결정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윤리규범 실천지침: (주)LG 정도경영TFT의 제안으로 (주)LG 정도경영 TFT 및 자회사 정도경영 담당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심의와 의사 결정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윤리규범 관련 지침 및 규정 운영

- (주)LG와 각 자회사는 윤리규범과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 개정할 수는 없으나, 윤리규범의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하부 실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윤리규범 변경 이력

- 1) 1994년: 윤리규범 제정
- 2) 2004년: 일부 개정 (표준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정)
- 3) 2008년: 일부 개정 (실천지침 구성 변경 및 구체화)
- 4) 2012년: 일부 개정 (경조 관련 기준 변경)
- 5) 2013년: 일부 개정 (CSR 및 선물수수 금지 등 내용 변경)
- 6) 2016년: 일부 개정 (부정청탁 금지법 등 내용 반영)
- 7) 2017년: 일부 개정 (윤리규범 체계 개편, 사회적 변화 반영)
- 8) 2023년: 일부 개정 (근거 법규 반영 등 서약서 내용 보완)

제보방법

1. On-Line (사이버 신문고)

LG 정도경영 홈페이지 <http://ethics.lg.co.kr>

2. Off-Line

각 사 정도경영 실천 조직 84Page, 85Page 참조

제보 유형 및 제보자 보호

제보유형

제보유형은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부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답변까지 최소한의 시간(7~10일)이 필요합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합니다.

부정비리 신고 포상 제도

LG는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가치를 훼손하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 포상 대상 행위

- 1)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제공 행위
- 2)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정도경영에 위반되는 부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2. 신고 방법

신고처	각 사 정도경영 담당부서
신고방법	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 우편, 전화, Fax 또는 직접 방문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적시하고 육하원칙에 의거 부정비리 내용과 증거자료를 신고 및 제출 단, 신고 시점 진행 중인 부정비리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 관계만으로도 신고 가능

3. 포상 대상: LG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

4. 포상 기준

- 1) 회사의 수익증대/손실 감소 발생시 해당 금액의 20% 이내 (최대 10억원)
- 2)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비리 행위는 금액 및 중요도에 따라 지급 (최대 천만원)

5. 포상금 지급 제외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2) 회사에서 인지 또는 회사로 신고된 사항 (정도경영 부서 및 유관 부서)
- 3)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4) 언론 보도 등으로 공개된 사항 등

※ 각 사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여부 및 포상금 산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함을 원칙으로 함 (제반 과세는 신고자 부담)

➔ 지주회사

- 정도경영 TFT Tel. 02 - 2088 - 60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28층
정도경영 TFT 윤리사무국

➔ 전자

- 전자 Tel. 080 - 337 - 30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서관 29층
LG전자 윤리사무국
- 디스플레이 Tel. 02 - 3777 - 1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11층
LG디스플레이 윤리사무국
- 이노텍 Tel. 080 - 660 - 5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0로 30 E1/E3동 7층 윤리사무국

➔ 화학

- 화학 Tel. 02 - 785 2020 Fax. 02 - 3773 - 70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24층 LG화학 윤리사무국
- 에너지솔루션 Tel. 02-3773-41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52층 LG에너지솔루션 윤리사무국
- 생활건강 Tel. 02 - 6924 - 6780 Fax. 02 - 6924 - 68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12층 LG생활건강 윤리사무팀
- 팜한농 Tel. 02 - 786 - 9974 Fax. 02 - 786 - 99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5층 팜한농 경영진단팀

➔ 통신·서비스

- U+ Tel. 1644 - 8119 Fax. 02 - 6928 - 20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길 LG유플러스빌딩 20층 윤리사무국
- LG헬로비전 Tel. 070 - 7373 - 1166 Fax. 02 - 376 - 84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 드림타워 7층 LG헬로비전 윤리사무국
- CNS Tel. 02 - 2099 - 0112 Fax. 02 - 2099 - 00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8로 71 LG사이언스파크 E13 CNS 윤리사무국
- D&O Tel. 02 - 6924 - 5180 Fax. 02 - 6924 - 514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50 D&O 강서사옥 9층 정도경영팀
- 지투알 Tel. 02 - 705 - 2933 Fax. 02 - 705 - 296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LG마포빌딩 10층 지투알 경영진단팀
- 스포츠 Tel. 02 - 2005 - 5750 Fax. 02 - 2005 - 58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LG스포츠 경영기획팀

